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6. 15 선고 2021가단45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단체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6. 15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전남 해남군 D 전 2,863㎡ 중 3/9 지분에 관하여, E, F, G에게 위 부동산 중 각 2/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0. 3. 5. 접수 제47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편병호

별지